

## 1999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

의 안 번 호	6
--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'99. 2. 3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관내 거주 무주택 전세입주자중 담보능력이 없어 전세자금 융자금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구의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고자,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.

### 2. 주요골자

가. 보증채무목적 :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

나. 보증채무내용

- 재 원 : 국민주택기금
- 융자금액 : 400,000천원('99. 시 배정액)  
※ 1가구당 750만원 이하
- 보증기관 :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- 피보증기관 : 한국주택은행 서부산지역 본부장
- 보증기간 : 한국주택은행의 채권변제 완료시까지
- 상환조건 : 2년이내 일시상환, 연이율 3%  
(단, 전세 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)

#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제3항
-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

## 1999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

### 1. 취 지

관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중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나, 융자담보능력부재로 은행대출이 곤란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하여 구의 보증채무를 통한 융자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.

### 2. '99.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내용

가. 재 원 : 국민주택기금(저소득주민 전세자금)

나. 융자금액 : 400,000천원('99. 시 배정액)

다. 융자대상

- 무주택자중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보증금 2,500만원 (융자금포함)이하의 전세입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가구주 (단, 월세는 1만원당 전세보증금 50만원으로 계상)

- ①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있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
- ② 재해, 질병, 사업실패 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
라. 융자한도액 : 가구당 750만원 이내

마. 이 율 : 연리 3%(신청자 부담)

바. 상환조건 : 2년이내 일시상환(단, 전세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가능)

사. 우선순위 결정 :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시행

아. 융자기관 : 한국주택은행 괴정동, 신평동, 다대동 지점

자. 융자기간 : '99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기간

(익년도 융자대출지침 시행일 이전까지)

차. 융자절차

- 융자 희망자가 신청서 작성 거주지 등에 신청
- 동장은 생활실태, 거주사실 등 조사후 적격자 구에 추천
- 구청장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적격자 심의 확정후 등에 통보
- 동장은 주택은행 및 대상자에게 통보, 대상자가 주택은행에서 융자

※ 융자받을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 연대보증 또는 주택금융  
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

### 카. 상환방법

- 대출은행의 융자조건에 의하여 상환
- 전세계약시 가옥주, 세입자,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전세금 반환시  
가옥주가 융자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  
조건을 전세계약서상에 명기하며, 동장은 반환받은 금액을 즉시 한국주택  
은행 해당지점에 상환함.

## 3.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내용

가. 보증채무 자금명 :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금

나. 보증채무금액 : 400,000천원('99년도 시 배정액)

다. 지급보증기관 :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
라. 피보증기관 : 한국주택은행 서부산지역본부장

마. 융자조건

- 자금명 :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금

- 융자금액 : 400,000천원(가구당 750만원 이내)

- 상환조건 : 2년이내 일시상환(단, 전세 재계약시는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)

- 이율 : 연리 3%

• 상환재원 : 원금과 이자 ▷ 신청자 부담

• 사하구청장은 융자원금,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 
보증채무 부담

바. 보증기간 : '99년도 융자금 범위내 (단, 주택은행과의 협약사항이 이듬해에도  
변동이 없을시는 매년 배정금액 범위내에서 보증기간도 자동연장  
되는 것으로 한다)

사. 근거 :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

아. 보증채무조건

- 융자금 반환의 특약 등

“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때에는 전세금중 융자금은 관할  
동장에게 반환한다”는 특약조건을 전세계약서상에 명기한 사항과  
가옥주,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 주택은행이  
확인하여야 함.

○ 손실보전

- (1) 융자원금,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 및 그 부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
- (2) 주택은행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이행된 때 또는 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월에 관할 동직원과 융자취급 점포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직접방문후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,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토록 함.  
※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손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
- (3) 결손보전후 협약당사자가 강제 집행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주택은행측의 소송대리인 선임, 주택은행 명의로 사하구청장의 비용 부담과 책임하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
- (4) 한국주택은행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의 결손보전이 있은후에도 사하구청장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토록 함